■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18조 (생 략)	**제1~18조 (좌 동)**
제19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생 략)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4의2. (생 략)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좌 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좌 동)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4의2. (좌 동)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1조 (생 략)	**제20조~제31조 (좌 동)**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 략)	**제2조 (좌 동)**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생 략)	**제1조~제2조 (좌 동)**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생 략)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좌 동)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신설)	0.10%
(신설)	(신설)

4. (생 략)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단, (신설)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생 략)

② (생 략)

제4조 (생 략)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신설)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좌 동)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적립금자산 평가액	수수료율(
~ 10억원 미만	0.4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3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26%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23%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0.2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0.18%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0.10%
2,000억원 이상	0.07%

4. (좌 동)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좌 동)

② (좌 동)

제4조 (좌 동)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제16조 (생 략)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생 략)	**제2조~제16조 (좌 동)**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좌 동)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 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 략)**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생 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단,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7.(생 략)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 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 략)**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좌 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좌 동) ② (좌 동) 1~3. (좌 동) 3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합병•분사•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초 계약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좌 동)